

## 환불 규정

### 가. 문화교육프로그램 환불 기준

구분	수업 개시 전	수업 개시 후
생활체육	수강료 100% 환급	수강료-(경과일수×수강료/월 총일수)-환불수수료(총 수강료의 10%)

※ 소비자보상기준(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업,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) 의거  
※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 의거

### 나. 소비자분쟁해결 기준(개정 2018. 2. 28.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-2호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, (2-2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	계약해제	※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 -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시설고장,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	※ 개시일이란 계약내용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,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
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※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 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.
-개시일 이전	전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	
-개시일 이후	취소일까지 이용 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	
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
-개시일 이전	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
-개시일 이후	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

※ 체육 시설업: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 종합체육 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  
※ 레저 용역업: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  
※ 할인회원권업: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

### 다. 환불신청법 (온라인 수강신청 - 마이페이지 - 수강신청 내역 - 수강이력현황 - 환불신청)

- 온라인카드결제 > 온라인카드환불
- 방문카드결제 > 방문카드환불
- 계좌이체 >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문 신청 > 계좌환불